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8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301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2. 9.자 취득세 98,110,000원, 지방교육세 8,211,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시 C 공장용지 7768.7㎡ 외 1필지 토지 합계 12,789㎡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면적 합계 3826.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000,000,000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이 농공단지에서 휴업·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것으로서 구 강원도 도세감면조례(2016. 10. 7. 강원도조례 제4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 80,000,000원을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2019. 12. 9. 이 사건 부동산이 구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 단서[1]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98,110,000원, 지방교육세 8,211,000원 합계 106,321,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다. 원고는 2020. 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0.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D), 원고는 2020. 10. 23.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 갑 제2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을 제10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세무조사 통지 당시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제9조 제2항 제1호를 근거규정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부칙<제4065호, 2016.10.7.> 제3조에 의하면, 위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구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제7조 단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세무조사결과를 고지하였고,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강원도지사가 이를 불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8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E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납품하기 위하여 톱밥을 생산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살피건대, 갑 제2, 3, 4, 12호증의 5, 13, 19, 2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종전에 목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G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2016. 6. 8.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8. 4. 18. 공장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심판청구 절차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2017. 11. 30. 경유 1,059,990원을 매입한 세금계산서, 원고가 2019. 8. 이후 H, I, J, K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급여현황 지급자료, L이 2017. 11. 13. M를 통해 톤백 200개를 구입하였다는 내역(수령인 'N'), 원고가 2017. 11. 18. 및 2017. 11. 23. 주식회사 O으로부터 중고톤백을 구입하였다는 거래원장(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을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19. 5. 25. P(상호 Q)과의 사이에 2019. 5. 25.부터 2019. 9. 30.까지 톱밥 300㎥를 15,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경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목 피죽 등이 쌓여있었는데, 원고는 2016. 6.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G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방치된 원목피죽을 매매대금 7,000,000원에 매입하되, 해당 매매대금은 원고의 주주 R이 주식회사 G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8

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G의 대표자 F이 2017. 불상경 인력과 이동식 톱밥 파쇄기를 구해와 이 사건 부동산 야외 마당에 적치해두고 이를 단기간 가동하여 원목 피죽을 톱밥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9호증, 을 제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함께 인정된다.

가) 담당 세무공무원이 2019. 4. 15.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출장을 실시하고 사진을 촬영하면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공장 내부에는 톤백, 기계 등 적치물이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을 뿐 공장은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피고는 2019. 9. 3., 2019. 9. 5. 세무조사 실시과정에서 원고 측에 목재를 사용하여 톱밥을 생산하였다면 목재구입내역, 이 사건 공장이 가동되어 근로자들이 근무한 적이 있다면 그 소득세납부내역,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1)항에서 본 것 이외에는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이 2019. 8. 28. 피고에 통보한 원고의 전기사용현황자료상 이 사건 부동산은 종전 소유자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2014. 2. 7. 단전된 이래 원고가 2016. 6. 8.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전기가 단전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9. 6. 11.에 이르러서야 전기재사용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 주식회사 S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월 차임 5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 임대신고를 하였다(갑 제2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S는 원고의 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8

유권 취득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임대기간	임대시설	임대용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주식회사 S	2017. 3. 2. ~ 2022. 3. 1.	건축물 및 공장 부지	1,000㎡	320㎡	100㎡	220㎡

라) 원고로부터 2017. 3. 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차한 주식회사 S의 전기사용량은 2017. 8.부터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7. 12. 12. 이후 주식회사 S의 신청으로 단전상태였다(원고의 과세전 적부심, 조세심판절차 및 이 법원에서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장과 기계시설을 가동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 마당에서 경유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식 파쇄기를 가져다놓고 일부 톱밥을 생산하였다는 것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상수도사용자는 2019. 9. 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G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상수도 사용량도 위 주식회사 S의 단전 무렵부터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이후의 상수도사용량도 극히 미미하며, 2018. 10. 이후는 상수도 사용량이 전혀 없다. 원고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도를 사용한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실제 원고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상 원고는 2016. 1. 1.부터 2018. 12.31.까지 매출과세표준이 전무하다가 2019년 제1기분 과세기간동안 144,000,000원의 매출과세표준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아래 사)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과 이웃한 T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약금을 2019. 4. 30. 수수한 것이다. 원고의 2017년, 2018년 제조원가명세서상 재료비, 노무비 등 제조원가로 계상된 내역이 없다.

사) 원고는 2019. 4. 주식회사 T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8

24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은 2020. 4. 30.로 정하되, 원고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식회사 T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사용을 허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T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내 기계설비와 장비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인 매매계약도 체결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3년 간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를 사용 내지 신청한 적이 없고, 독자적으로 수도를 사용한 적도 없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4. 주식회사 T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에 관하여 최초로 매출과세표준을 신고하기까지 공장을 가동하여 생산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부가가치세 신고, 직원들의 소득세 신고 기타 원가신고 일체를 한바 없다. 원고가 공장을 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S에게 임대하기까지 하였다.

3) 원고가 2017.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주식회사 G의 대표자 관여 하에 원고의 소유권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방대한 규모로 적치되어 부패한 상태로 남아있던 원목 피죽을 처분하는데 협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야외에서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대표자 F이 구해온 이동식 기계와 인력을 이용하여 단기간 톱밥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8

처리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2016. 6. 8. 상실한 전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적치되어 있던 원목 피죽 등을 원고에게 양도한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F이 2017년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의 공장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위 F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F의 일부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F은 전기요금 문제로 전기신청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장을 직접 가동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장의 마당에서 경유로 파쇄기를 가동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사용경위를 고려할 때 전 소유자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남겨두고 간 적치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협조 하에 공장건물 밖 노상에서 일부 톱밥처리 작업을 하였다거나 이를 E조합공동사업법인 등에게 처분하려다 좌절된 적이 있다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T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약 2개월이 지난 2019. 6. 11.에 이르러서야 전기재사용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전기재사용신청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즉시 주식회사 T에 부담하는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매수인의 공장영업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며,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가동하였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급상여수당지급현황 자료[3] 역시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T에 매각한 이후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8

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8

별지)

관계 법령

■ 구 강원도 도세감면조례(2016. 10. 7. 강원도조례 제4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부칙<제4065호, 2016.10.7.>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법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